

인슈어테크와 보험업 허가주의에 관한 고찰*

- 2019년 EU 보험연금감독청 보고서를 중심으로 -

김 화 중**

<차례> _____

- I. 머리말
 - II. 2019년 EU 보험연금감독청 보고서의 주요 내용
 - III. 보험업법상 진입규제 개요
 - IV. 인슈어테크에 대한 규제 검토
 - V. 맺음말
-

주제어 : 인슈어테크, 핀테크, 보험업법, 허가주의, 동일행위 동일규제, 비례원칙, EIOPA, 규제차익, Solvency II, 규제샌드박스, 소액단기보험업

<국문초록> 인슈어테크(Insurtech) 확산과 더불어, 이른바 빅테크(Big Tech) 같은 IT 기반 플랫폼이나 소규모 스타트업의 보험시장 진입 활성화가 예상된다. 이 경우 보험서비스와 유사한 사업모델에 대한 허가 필요여부 등 기존의 진입규제 적용이 문제되고, 산업혁신과 거래 질서·소비자보호 간 균형이 쟁점이 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경제현상에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규범지체 현상도 빈발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인슈어테크에 대한 EU의 제도적 고민이 담긴 2019년 보험연금감독청 보고서를 중심으로 우리 제도상의 규제 방향성을 모색해 보았다. EU 조차도 새로운 인슈어테크 환경에서 규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 보고서 역시 세밀한 제도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최소한의 전제로 견지하는 것은 바로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과 비례원칙이다. 이를 바탕으로 검토하면, 첫째, 새로운 인슈어테크 모델의 보험업 허가대상 여부에 모호한 점이 있더라도, 경쟁경쟁의 장을 저해하는 규제차익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즉,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비추어 위험보장기능을 수행하고 다수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보험규제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 둘째, 일단

* 본 논문은 저자의 2021년 4월 한국보험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문을 기반으로 새로이 작성한 자료입니다. 사회 및 토론에 참여해주신 고려대 법전원 박세민 교수님, 전남대 법전원 박인호 교수님, 손보험회 김원신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또한 보완할 부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논문은 저자의 개인적 견해에 바탕하며 소속회사의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 삼성화재해상보험 수석, 법학박사(Ph.D. in Law).
- 논문접수일(2021.06.07), 심사개시일(2021.06.10), 게재확정일(2021.06.22)

규제영역에는 포함시키되 위험기반 비례원칙을 반영한 유연한 제도적 대처가 필요하다. 새로운 IT기술과 제도 간 융합의 역동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효용과 위험성 간의 비교형량을 통한 정교한 감독대응이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진입규제상 비례원칙은 예를 들어 허가요건 완화나 예외인정, 자본금 조정도 들 수 있는데, 최근에 국내에 도입된 규제샌드박스나 소액 단기보험업제도 등의 활용도 가능하다. 위와 같은 기본원칙 하에 향후 출현가능한 다양한 사업모델에 대한 각론상의 검토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I. 머리말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와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두 가지 축은 전통적인 금융 규제의 존립이유이자, 개별적인 규제가 지향해야 할 목적이다. 금융회사의 지배 구조 문제 또는 재무건전성 부실은 전체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도 상당하다. 또한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금융회사의 성격상 구체적인 금융상품 내용의 부적절성이나 판매과정의 부실 가능성은 불측의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기도 한다. 금융업에 있어서 이와 같은 부정적 요인을 억제하기 위해, 제도적 진입장벽 설정이나 진입 후의 거래행태 규제가 강조되는 것이다.

그런데, 과거에는 생각하기 어려웠던 플랫폼(Platform)을 이용한 금융거래, 인공지능(A.I)이나 블록체인(Blockchain) 활용, 또는 자동화된 스마트계약처럼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는 이른바 핀테크(Fintech)가 국내외 금융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¹⁾ 이러한 신기술을 접목한 사업모델은 전통적인 진입 규제나 행위규제의 해석 또는 새로운 규범설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야기하기도 한다. 국회의 입법활동이나 정부의 규제 신설은 일반적으로 기존의 축적된 사례와 경험에 기반한 ‘장래예측적(Prognose) 국가작용’인데, 그 난해함으로 인해 현실과 규범의 괴리현상이 자주 나타나는 분야가 기술영역이라는 지적²⁾도 공감할만하다. 이러한 문제점은 기술혁신의 산업 적용이 동태성(動態性)을 띠는 반면,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추구하는 법·규제는 정태성(靜態性)을 띠는 것에 기인한다.³⁾

1) 맹수석, “인슈어테크와 보험법적 쟁점”, 『보험법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보험법학회, 2020, 4면.
2) 김태오, “기술발전과 규율공백, 그리고 행정법의 대응에 대한 시론적 고찰”, 『행정법연구』 제38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4, 84면.
3) 김태오, 위의 논문, 92면.

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함께 보험분야 역시 인슈어테크(Insurtech)가 부각되고 있다. 인슈어테크는 보험회사 업무효율화 및 보험소비자 후생증대의 취지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에 수반하여 기존 보험 관련 법률이나 각종 규제에 부합하는지 여부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⁴⁾ 새로이 출몰하는 각종 사업모델의 허용 여부에 있어서 규범지체 현상은 여전히 예상되며, 보험산업 혁신과 시장질서·소비자 보호라는 양자 간의 균형도 쟁점이 될 수 있다. 특히, 향후 이른바 빅테크(Big Tech) 같은 IT 기반 플랫폼이나 소규모 스타트업의 보험시장 진입이 예상되는데, 보험유사 서비스 같은 새로운 사업모델에 대한 보험업 허가 여부 등 기존의 진입규제 적용이 문제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슈어테크 환경의 보험업 허가 운영방향에 관한 EU 보고서를 개관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보험업 허가제의 법리와 취지를 살펴본 후 그 운영의 지향점을 모색해보기로 한다.

II. 2019년 EU 보험연금감독청 보고서의 주요 내용

1. 배경

EU 보험·연금감독청(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Authority, 이하 “EIOPA”)은 EU 경제, 시민·기업을 위해 금융시스템 안정성 및 지속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여기에는 (a) 건전하고 효과적이고 일관된 수준의 규제 및 감독을 포함한 시장의 기능개선, (b) 금융시장의 무결성, 투명성, 효율성 보장, (c) 국제적인 감독조정, (d) 규제차익 방지 및 동등한 경쟁조건 촉진 (e) 보험, 재보험 및 퇴직연금 등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감독의 보장, (f) 소비자보호 강화에 대한 책임이 포함된다.⁵⁾ 2017년 6월 감독자협의회(Board of Supervisors)는 인슈어테크와 관련하여 이러한 EIOPA의 책무를 확인하고,⁶⁾ Insurtech Task Force

4) 다른 금융업종의 핀테크 확산추세에 견주어 보험업 분야의 인슈어테크는 상대적으로 지체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보험계약법적 쟁점 등에 대한 검토도 미흡했던 것으로 지적된다. 맹수석, 앞의 논문, 5면.

5) Article 1 of the Regulation (EU) No 1094/2010 (EIOPA Regulation).

6) 2011년 1월 출범한 EIOPA는 비상시 구속력 있는 조치의 실행권한이 있고, 소비자 보호를 기본 임무로 하며, 기술적 규제기준 및 실행기준 공포, 구속력 없는 권고사항 제시 등 역할을 수행한다.

(이하 “ITF”)를 설립하기로 했다.

2. 회원국 감독기관에 대한 기초설문

EIOPA는 우선 보험업 허가요건을 분석하고, 금융혁신 과정에서 비례원칙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평가작업을 진행했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 2018년 6월 인슈어테크 허가요건 등에 대해 회원국의 감독기관들(National Competent Authorities, 이하 “NCAs”)을 상대로 설문을 실시했다. 이 설문은 31개국 NCAs를 대상으로 했으며, 2018년 7월까지 25건이 회신되었다.⁷⁾

우선 각국 NCAs는 2018년 당시 총 779개의 규제대상 인슈어테크 회사와 123개의 비인가 인슈어테크 회사가 존재한다고 회신했다. 응답자의 73%는 대부분의 인슈어테크 회사가 손해보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한 반면, 27%는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분야 모두에 존재하고 있다고 회신했다.⁸⁾ 설문결과 특이한 점은, NCAs의 60%가 자국에 인슈어테크 회사로 볼 수 있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중개업자가 없다고 하거나, 감독정책 실행에 있어서 인슈어테크 회사 또는 스타트업 인지를 구별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점이다.⁹⁾ 또한 대부분의 NCAs는 비인가 인슈어테크에 관한 체계적 정보를 지니고 있지 않다고 회신했다.¹⁰⁾

EIOPA는 분석내용에 바탕하여 2019년 “인슈어테크 환경 하의 비례원칙과 P2P 보험, 허가요건에 관한 모범사례 보고서”를 배포했다. 보고서는 크게 인슈어테크 시장분석, 허가요건, 비례원칙, P2P 보험, 아웃소싱 등 다섯 개의 소주제로 구성되었고, 각 주제에 대한 분석 및 모범사례 제시를 내용으로 하였다. 모범사

김은경, “Solvency II와 보험감독체계의 변화”,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학술발표논문집』, 한국금융소비자학회, 2012, 14-16면.

7) EIOPA는 동일한 주제에 대한 온라인상의 이해관계자 설문조사를 시작하여 보험업계 및 보험가치사슬 안에서 직접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회사들의 의견까지 수집했다. 여기에는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회사, 조합, 학회, 투자자, 보험협회, 중개사협회, 소비자 등이 포함되었다. EIOPA, “Report on best practice on licencing requirements, peer to peer insurance a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an Insurtech context”, 2019, p. 8.

8) Ibid., p. 10.

9) 이러한 회신결과의 원인은 인슈어테크 사업모델이 새로운 형태로 출현하고는 있으나 아직은 기존 EU 각국의 보험업 규제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규제측면의 특별한 차별성이 필요하지는 않았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0) EIOPA, op. cit., p. 10.

례는 EU 또는 각국 법률에 대한 보완지침으로 간주되는데, NCAs나 금융회사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자발적 규범화는 권장된다.¹¹⁾ 그리고 동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인슈어테크 업체들의 가치사슬 영역을 분석함에 있어서 기술중립성을 준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¹²⁾

3. 보험업 허가요건

(1) EU의 현행 규제

1) Solvency II 허가관련 규제의 개요 및 취지

EU의 보험업 허가요건은 재무건전성이나 소비자보호라는 정책취지에 근거하여 Solvency II Directive¹³⁾ 및 Insurance Distribution Directive(이하 “IDD”)의 규제를 받는다. EU 회원국 영토 내에 본사를 설립하여 보험업 및 재보험업 영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Solvency II Directive Chapter II의 Article 14에 의거하여 해당 회원국 감독기관의 사전허가를 득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허가절차 과정에서 사업자는 손해보험, 생명보험, 재보험 등 분야에 따라 각 회원국이 요구하는 법적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ANNEX III). Article 18은 허가요건을 명시하고 있는데, 각 회원국은 그 외에 임의로 추가요건을 부가할 수는 없다. 구체적으로 동 조항은 보험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에 국한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하고 그 외의

11) EIOPA가 회원국에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나 권고에 관하여, EIOPA Article 16 (3)는 “comply or explain” 체계를 명시하고 있다(*within 2 months of the issuance of a guideline or recommendation, each competent authority shall confirm whether it complies or intends to comply with that guideline or recommendation. In the event that a competent authority does not comply or does not intend to comply, it shall inform the Authority, stating its reasons*). 그러나 EIOPA가 통상적으로 제시하는 모범사례(best practice)의 경우, 그러한 “comply or explain” 원칙을 적용받지는 않는다. Ibid., p. 9.

12) Ibid., p. 10. 규제 접근의 원칙으로서의 ‘기술중립성’은 기술환경이 급변하더라도 제도적 측면에서 유연하고 탄력적인 대응을 가능하게끔 한다. 최정윤·김형섭, “초연결사회에서의 합리적 규제완화 방안 - 규제샌드박스를 중심으로”, 「법과 정책연구」 제19집 제4호, 한국법정책학회, 2019, 62면.

13) 보다 강력한 지급능력감독제도인 Solvency II는 2016년부터 기존 14개 보험 관련 지침(Solvency I)을 대체하였다. 김해식·임준환, “EU 보험시장 진입의 열쇠, Solvency II 동등성 인정 제도”, 「KiRi Weekly」 Vol. 416, 보험연구원, 2017, 2면. Solvency II는 기존의 지급능력규정(Solvabilitaetsvorschrift)에서, 위험중심 금융규제시스템(System der Finanzaufsicht)으로의 개선을 지향하며, 크게 ① 보험회사의 양적 요건(quantitative Fragestellungen) : 자산(Aktiva)과 부채(Passiva)의 평가(Bewertung) 규정 등, ② 보험회사의 질적 요건(qualitative Anforderungen) : 지배구조시스템 등, ③ 감독기관에 대한 보고의무(Berichtspflichten) 및 정보공시(Öffentlichkeit) 등으로 구성된다. 김은경, 앞의 논문, 3-4면.

사업적 활동은 제한되는 점, 최소자본요건(MCR) 충족 요건, 거버넌스 시스템 (Chapter IV의 Section 2) 준수 등을 규정하는데, 제1항에서 제4항까지 대부분의 내용은 주로 적격 자본요건 충족의무를 담고 있다.

한편,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정 사업체들은 법적 지위나 성격으로 인해 Solvency II Directive의 규제범위에서 제외되기도 한다(Solvency II Directive Article 5~Article 10). 또한 Article 4는 사업규모를 기준으로 규제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Solvency II의 예외는 ① 매우 작은 사업체들은 일반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위험요소가 단순하다는 점, ② 그러한 소규모 보험사업자의 EU 규정 준수 여부를 해석하는데 소요되는 규제비용이 부정적 위험과 대비하여 불균형하게 높을 수 있는 점, ③ 소규모 사업체들은 친목모임 등 특정 소비자 범위에 국한한 서비스 가능성이 있는데, 과도한 규제부담으로 사업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소비자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실무적 이유를 근거로 한다.¹⁴⁾

2) EU 회원국의 자체 규제권한

다만, Solvency II Directive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이더라도, 회원국은 자체적으로 허가취득을 요구하여 감독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있다. 이는 회원국이 해당 사업자를 규제에서 완전히 배제하거나, 또는 자신만의 맞춤형 법적 틀을 설계하여 Solvency I을 적용하거나 Solvency II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의미한다.¹⁵⁾ Solvency II의 예외제도는 EU 회원국이 시장상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비례적 접근을 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며, 인슈어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의 탄력성 측면에서 긍정적인일 수 있다.¹⁶⁾

3) Solvency II의 기본전제로서의 보험계약자 보호

위와 같이 EU 규제의 적용대상 또는 적용제외에 각각 존재하는 두 가지 사업 유형이 구축되더라도, 이로 인해 두 가지 유형의 보험계약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¹⁷⁾ 보험계약자 이익 보호를 위해 회원국은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

14) EIOPA, op. cit., p. 13.

15) Ibid.

16) Ibid.

17) Ibid., p. 14.

체들에게 예를 들어 자본요건과 같은 적절한 국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빠르고 가파른 성장을 추구하며 투자자 이익을 위해 Solvency II Directive 제4조에 명시된 조건을 간과하는 경향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¹⁸⁾

4) 보험판매에 관한 지침(IDD)의 경우

IDD 역시 Solvency II Directive와 유사하게 특정 조건의 보험판매활동을 행하는 보조적 보험중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¹⁹⁾ 다만, IDD는 최소한의 지침이므로 EU 법률과 합치되는 한, 회원국들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다 엄격한 조항을 유지하거나 도입할 수도 있으며, 이는 회원국이 IDD 규제범위에서 제외되는 보조적 보험중개업자를 규제대상으로 포함시킬 뿐만 아니라, 더 엄격한 보험중개업자 허가요건을 도입할 여지가 있음을 의미한다.²⁰⁾ 또한 보험판매로 간주되지 않는 활동도 규제할 수 있으며, 접근방식에 따라 각국의 허가요건이 다양해질 수 있다.²¹⁾

(2) 인슈어테크와 관련한 EU 각 회원국의 입장

1) 동일행위, 동일규제의 원칙(same activities, same rules)

가) 규제차익 존재 여부

기존 보험사업자에 대비한 인슈어테크 허가방식의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에 관한 설문에 대하여, 대부분의 NCAs는 기존 보험사업자와 대비한 인슈어테크의 규제차익은 없으며 다만 4개 NCAs는 규제차익이 일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보험가입자에 대한 서면정보제공 등 IDD의 보험모집상 서면요건이나 최소자본요건(MCR) 등이다.²²⁾

18) Ibid.

19) IDD는 EU에서의 보험 및 재보험 판매활동의 진입 및 수행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있는데,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보조 보험중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a) 보험이 제조자의 상품이나 용역의 부가서비스(고장, 분실, 파손 등으로 제조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미사용 손실, 또는 여행예약과 관련된 수화물의 파손, 분실 또는 다른 위험), (b) 연간 보험료 총액은 600유로 이하, (c) 부가서비스성 보험의 보험기간은 3개월 이하, 인당 보험료 총액은 200 유로 이하(Article 1(3) of the IDD). Ibid., p. 28.

20) Ibid.

21) Ibid.

나) 공정한 경쟁의 장(場)의 중요성

일부 NCAs는 규제 및 감독은 “동일행위, 동일규제”라는 행위기반 구조여야 하고 기술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금융규제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즉, 혁신촉진이 곧 규제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인슈어테크 회사가 기존 보험회사와 동일한 서비스 및 상품을 제공하고 동일한 리스크에 노출되는 경우, 동일한 법률 및 감독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²³⁾

규제는 비례적이고 실용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는데, 시장변화에 대응하여 단순히 새로운 규제만을 도입하기보다는 현존 규제를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또한 P2P(Peer to Peer) 보험처럼 위험보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보험규제에 포섭할 수 있도록, 규제적 관점에서 ‘보험 개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점도 지적되었다.²⁴⁾

2) 허가제도 운영에 관한 EU 각 회원국의 회신

일부 NCAs는 인슈어테크 사업활동을 추진하려는 사업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술한 것처럼 Solvency II Directive의 제18조 (1) a는 회원국 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모든 사업체의 사업목적은 보험사업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업무로 국한해야 하고, 다른 상업적 활동은 배제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로 인해 각국 규제상 보험사업자의 경영·부수업무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 인슈어테크 회사가 IT 비즈니스를 이미 비중있게 수행하고 있는 경우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인슈어테크 회사의 사업활동이 보험회사로서의 본질적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한, 유연성 있게 적용될 여지는 있다.²⁵⁾

또한, 인슈어테크 회사들은 보험계리적 역량을 구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통적인 보험회사와는 다른 위험관리, 내부통제 기능이 필요할 수 있다고

22) Ibid., p. 15.

23) Ibid.

24) Ibid. 전통적으로 보험의 개념정의는 매우 다양하고 일률적 정의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Margarida Lima Rego·Joana Campos Carvalho, “Insurance in Today’s Sharing Economy: New Challenges Ahead or a Return to the Origins of Insurance?”, *InsurTech: A Legal and Regulatory View*,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2019, p. 41), 그러한 규제측면의 개념조정은 어려운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5) EIOPA, op. cit., p. 16.

언급되었다.²⁶⁾ 이에 대하여 EIOPA는 전통적인 보험사업자에 비한 자원부족이 기존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변명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자에 대한 규제적 요구사항은 해당 사업자의 위험에 비례하는데(위험기반 감독체계), 이러한 규제준수 의무가 과도한 감독부담은 아니며 결국은 위험관리의 필요 수단이라는 것이다.²⁷⁾

자본요건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벤처캐피탈을 통한 자본마련이 필요하고 그러한 자본요건 충족을 전제로 허가를 받는데, 허가는 벤처캐피탈 자본을 얻기 위한 요건이 되는 난처한 순환고리는 결국 스타트업의 자본조달에 장애요인이 된다.²⁸⁾ 또한 스타트업에 있어서 최소자본요건(MCR)과 사업초반의 적은 고객 숫자는 강한 진입장벽이 되는데, 그 해결책으로 스타트업과 기존 보험회사의 제휴가 추천된다.²⁹⁾

한편, 일부 NCA는 경영진의 보험업 경력이나 정보보호 등 IT업무경력을 필수화하는 경우³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점을 지적했다. 관리, 경영임원 등의 경력에 대한 평가는 인슈어테크의 사업성격,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요건 사항들은 Solvency II Directive 제42조 및 Solvency II 위임규정 제258조 및 제273조에 규정되어 있다.³¹⁾

26) Ibid.

27) Ibid.

28) 우리 보험업법 제7조는 보험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주식회사 설립 전이라도 예비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주식회사 상호회사 설립, 인적·물적설비 구비 등을 조건으로 예비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예비허가 신청을 통해 보험업 허가 거부 판단을 먼저 받도록 하여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막도록 하는 취지인데(성대규, 「한국보험업법」 개정판, 두남, 2012, 130-131면), 이는 자본요건 충족과정에서의 장애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 예비허가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프랑스 등 유럽의 사례에 견주어 국내 예비허가 제도가 본 허가와 중복된 이중규제라는 비판도 있으나(백정웅, “프랑스 보험업규제와 그 시사점”, 「비교사법」 제23권 제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6, 372면), 이와 같이 최근의 인슈어테크 시장진입 과정에서 자본조달 문제를 해소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으므로 활용가치가 있을 것이다.

29) EIOPA, op. cit., p. 16.

30) Solvency II 및 EU 의회지침에 의한 보험회사의 지배구조 요건사항 중 인적조직에 대한 전문적 적격성도 포함되며, 이는 fit(직업상 자격과 지식경험) and proper(관리자의 적합성) test를 통한 심사로 진행된다. 김은경, 앞의 논문, 6면. 국내의 경우도 기업 지배구조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경영진, 즉 이사회 등의 구성과 관련하여 그러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요구되고 있다. 김홍기,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 3년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제도개선 방향”, 「금융법연구」 제16권 제3호, 한국금융법학회, 2019, 10면.

31) EIOPA, op. cit., p. 16.

(3) EIOPA의 모범사례

인슈어테크 회사의 허가절차상 감독기관 역할은 해당 기업이 지속적으로 보험 계약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공정한 경쟁의 장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허가기준의 일관성이 필요하며,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막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키기 위해 허가절차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커뮤니케이션과 정기적 소통도 중요한데,³²⁾ 이에 관한 온라인 시스템은 절차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시킬 수 있게 한다. EIOPA는 다음과 같은 모범사례를 제시하였다.³³⁾

1) 허가요건의 기본원칙

첫째, EU 법률에 명시된 조항에 추가하여 보험규제를 적용하는 회원국은 규제에 관한 행정적 부담이 소비자보호 및 재무안정성과 비례적이어야 하며, 기술중립성도 유지해야 한다. 둘째, 계약자 이익 보호를 위해 회원국은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체에 적절한 국내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셋째, 모든 허가요건에 있어서 적용가능성, 핵심내용, 절차가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2) 허가신청 절차

첫째, 위험기반 감독체계 아래에서 허가요건 및 절차는 명확성, 객관성, 공개성,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둘째, NCAs는 허가신청 방법에 관한 지침을 발행하는데, 문서형식, 신청소요기간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셋째, 허가 또는 등록요건은 기술중립적이어야 한다. 넷째, 규제범위를 잘 이해하기 위한 의사결정 도해(tree) 공개, 신청자와 감독당국 간의 상호토론이 권장된다. 다섯째, NCAs는 관리, 경영, 감독업무 구성원의 자격요건 평가시, 인슈어테크의 사업성격, 규모 및 복잡성 등을 고려한다. 여섯째, 허가요건은 NCAs 웹사이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 일곱째, 온라인상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직접적인 허가신청 제출이 가능하며 그 진행상황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여덟째, 허가신청 전 참고할 수 있는 사전 체크리스트를 발행해야 한다.

32) 국내에서도 디지털금융 추진과 관련하여 정부민간의 공개토론(open discussion) 필요성이 강조되는 데(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1 금융위 업무계획」中 디지털금융 혁신 세부과제, 2021. 1. 28.), 그러한 의사소통의 한 통로가 될 수 있다.

33) EIOPA, op. cit., pp. 18-19.

4. 비례원칙(Principle of Proportionality)

(1) 개요

비례원칙은 법률의 적용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원칙이다.³⁴⁾ 이는 또한 공동체 기득권(Acquis Communautaire)³⁵⁾에 내장된 개념이므로, 감독 관련 비례적 접근법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적용이 가능하다. 비례원칙은 EU법 전체에 적용되는데, 여기에는 법적 요건사항에 비례성이 참작되어야 한다는 측면과 구체적 감독 역시 비례적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측면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³⁶⁾

모든 법률 조항은 사업자 위험의 성격, 규모 등에 비추어 적합해야 하고,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합하고 필요해야 한다. 달성할 목적과 수단은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수단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최소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비례원칙은 입법 및 행정적 권한의 남용에 대한 보호책이기도 하다.³⁷⁾

(2) 구체적 규제와 비례원칙

보험사업 영위를 규제하는 Solvency II의 주요 목표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의

34) EU 공동체법상 비례원칙은 일반원칙의 하나로 독립된 법원(法源)이며, 최고 법원으로서의 지위와 함께 보충적 법원으로서의 지위도 갖고 있다. 채형복, “유럽공동체법의 일반원칙으로서 비례원칙과 공동체의 권한 행사의 한계”, 『국제법학회논총』 제51권 제2호, 대한국제법학회, 2006, 67-68면.

35) Acquis Communautaire는 EU의 목표, 실질적 규칙, 정책, 10만 건 이상의 법률과 판례법으로 구성된 유럽공동체 법집서를 지칭한다. 여기에는 EU 내 효력이 있는 모든 조약, 규정 및 지침과 법원 판결이 포함된다. *Eurofound*, last modified Mar 11, 2007, accessed May 15, 2021, <https://www.eurofound.europa.eu/observatories/eurwork/industrial-relations-dictionary/acquis-communautaire>; Joshua C Fjellstul, “The evolution of European Union law: A new data set on the Acquis Communautaire”, *European Union Politics*, Vol. 20(4), Sage Journals, 2019, p. 671.

36) EIOPA, op. cit., p. 20. 비례원칙은 공동체의 목표와 수단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원칙으로 프랑스나 독일 등의 국내법에서 출발하여 점차 공동체의 일반원칙으로 포섭되었으며, 공동체법상으로는 공동농업정책(CAP)을 규정하는 EEC조약 제40조 제3항에서 직접적으로 유래되었다. 채형복, 위의 논문, 64면.

37) EIOPA, op. cit., p. 20. 비례원칙은 EU 공동체의 여러 기관 및 회원국의 조치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유럽사법재판소에 의해 발전되어 왔으며(채형복, 위의 논문, 77면), 특히 2차 세계대전 후 입헌주의를 통한 자유권 확대 움직임과 연결되어 있다. Alec Stone Sweet and Jud Mathews, “Proportionality Balancing and Global Constitutionalism”, in *Giorgio Bongiovanni* (ed), *Reasonableness and Law*(Springer, 2009), pp. 173-214(장경원, “EU 행정법상 비례원칙”, 『행정법연구』 제34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2, 28면에서 재인용).

자 보호이다. 감독은 위험기반 접근방식에 의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보험회사의 감독규정 준수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이 포함된다. 비례원칙은 자본요건, 지배구조, 공시 등 Solvency II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어야 하며, 회원국은 Solvency II에 명시된 요건이 보험사업에 내재된 위험의 성격, 규모 및 복잡성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³⁸⁾ 구체적인 사업행위 규제는 Solvency II가 아니라 IDD의 규제대상이 되는데, IDD는 또한 이러한 비례원칙을 도입하고 있다.³⁹⁾

(3) 비례원칙에 대한 EU 회원국의 입장

대다수 NCAs는 Solvency II Directive 및 IDD 등의 적용에 있어서 비례원칙을 적용한다고 응답했다.⁴⁰⁾ 그 과정에서 모든 사업체들을 항상 감독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상위험에 기반한 선별적 감독이 수행될 수 있다.

(4) 비례원칙에 관한 모범사례⁴¹⁾

첫째, NCAs는 자국의 인슈어테크에 비례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정량적 또는 정성적 기준으로 구성된 서면지침을 수립해야 한다. 서면지침은 특히 감독에 관여하는 자가 많거나 인슈어테크 사업자들이 많은 경우 유용하다. 둘째, 서면지침 외에 감독당국과 업계 간의 정기회의 또는 비례원칙의 실무사례를 담은 뉴스레터 등 정보공유도 권장된다. 셋째, NCAs는 비례원칙 적용을 포함한 복잡한 인슈어테크 이슈에 대해 NCAs에게 조언할 수 있는 감독패널을 내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전문가 패널은 준법, 위험관리, 보험계리, 감사 등 다양한 배경을 지닌 직원으로 구성될 수 있는데, 감독당국의 일관된 접근방식을 보장한다. 넷째, 비례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술유형, 아웃소싱 사용정도, 독과점 가능성, 상품유형 등을 고려한다.

38) EIOPA, op. cit., p. 20.

39) Ibid., p. 21.

40) 회원국의 특정 조치가 EU 공동체가 목표달성을 위해 채택한 수단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조치는 공동체법상 비례원칙 위반이 된다. 채형복, 앞의 논문, 75면. 한편, 비례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은 각국마다 상이한 가치평가에 따른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이는 유사한 사안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적용이나 해석에 있어서도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경원, 앞의 논문, 32면.

41) EIOPA, op. cit., p. 23.

5. 인슈어테크 환경의 구체적 대응사례 - P2P 보험

앞서 살펴본 것처럼 EIOPA가 회원국 설문을 통해 확인하고 강조한 인슈어테크 사업모델에 대한 기본적 접근방법은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이다. 즉, 위험보장이라는 보험의 기본기능을 수행한다면, 소비자 보호와 공정경쟁의 장(場) 보장을 위해 기존 허가 관련 규제의 수범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일단 규제는 하되 IT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사업모델에 대한 일률적 규제 는 과잉규제 위험성도 있으므로, 사업자나 사업모델의 위험성 등에 비례한 탄력적 규제 필요성을 함께 표명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비례원칙의 구체화 및 시장과의 소통을 강조하였다. IT 플랫폼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는 P2P 보험 사례를 통해, EIOPA는 인슈어테크 사업모델에 있어서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과 비례원칙 적용을 좀더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다.

(1) 새로운 인슈어테크 모델로서 P2P 보험의 문제점

2017년 4월에 개최된 EIOPA Insurtech 회의에서 동료그룹에 의한 보험료 기금 구성, 즉 P2P 보험을 보험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이에 관한 특별한 규제정립 필요성도 제안되었다.⁴²⁾ 보험회사나 보험중개업자가 운영하는 P2P 보험모델은 각각 보험회사 또는 보험중개업자로 인가되며, 따라서 기존 보험에 관한 규제를 따른다. 그러나 기술서비스 업체가 운영하는 플랫폼제공자 모델은 전통적 규제와의 정합성이 떨어지게 된다.⁴³⁾

이와 같은 새로운 사업모델은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발생가능한 위험성도 고려해야 하는데, P2P 보험의 운영주체는 규제회피 목적으로 위험인수를 직접 하지는 않고 단지 플랫폼을 이용하게 할뿐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⁴⁴⁾ 이러한 연장

42) Ibid., p. 25. P2P 보험은 ‘소비자끼리 스스로 보험단체를 구성하고 일정 규모의 손실까지는 자체적으로 위험을 부담하되, 보험기간 만료시 지급보험금을 제외한 잔액이 남은 경우 소비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환급하는 위험보장제도’로 정의할 수 있다. 김화중, “P2P 보험의 법적 성격과 규제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1, 19면.

43) 온라인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수직적 가치사슬이라기 보다는 복합적인 가치 웹(value web) 또는 생태계(eco system) 체계에 부합하며, 공동비전과 목표를 공유하는 동반자 또는 네트워크 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규제체계가 필요하다. 홍대식,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경제 정책”, 「법학연구」 제31권 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336면.

44) EIOPA, op. cit., p. 25.

선에서 기존의 보험회사와 동일한 재무요건 요구는 과도하다고 하며, 단지 플랫폼서비스 사업자로서 보험료 기금의 효율적 관리만을 유일한 의무로 여길 수 있다.⁴⁵⁾

감독 측면의 곤란한 점에 관하여, 일부 NCA는 법률에 P2P 보험에 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것이 당국과 사업자 모두에게 불확실한 규제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또한 특정 NCA는 상호기금을 통한 자체적 보험이 보험사업 활동의 오용, 위험관리 및 자산계정분리,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문제가능성이 있음을 밝혔다.⁴⁶⁾ 다만, 규제 측면에서 대부분의 NCAs는 P2P 보험에 대응한 특별한 계획은 없다고 답변했고, 일부 NCAs는 시장이 성장하기 시작하면 규제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을 했다.⁴⁷⁾

(2) 구체적 규제지침

혁신적 사업모델의 역동성과 기존 EU 법률에 대한 회원국의 다양한 해석을 고려할 때 P2P 보험 판매업체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식이 등장할 수 있다. 만약 허가요건에서 특정 사업활동을 제외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대체보호수단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하에서는 EIOPA가 밝힌 P2P 보험에 대한 규제원칙을 소개한다.⁴⁸⁾

1) 기존 보험업 규제의 수범대상

단순히 플랫폼만을 제공하는 IT서비스 제공업체라고 하더라도 이는 보험사업 수행으로 간주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해당 보험플랫폼 제공업체로부터 보험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기대를 하기 쉽고, 그러한 소비자 기대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는 플랫폼제공업체가 기존 보험사업자와 유사한 자산규모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보험판매지침(IDD) 등 규제의 수범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지급의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재무적으로 탄탄해야 하고,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며, 높은 등급을 지닌 재보험회사에 적절히 재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45) Ibid.

46) Ibid., pp. 29-30.

47) Ibid., p. 31.

48) Ibid., p. 29; 김화중, 앞의 논문, 155-158면 참고

2) 인슈어테크 사업모델 특성을 반영한 비례원칙의 적용

위와 같이 일단 기존 규제의 적용대상으로 삼더라도, 소비자나 시장에 대한 영향도 정도를 감안하여 공시조항이나 자본요건 등에 대한 맞춤형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고객규모를 일정 한도로 제한하고 그에 관한 소규모 보험업 제도를 창설할 수도 있다. 또한 Solvency II Directive Article 4의 소규모 보험회사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EU 각국은 완전한 적용제외를 하거나 별도의 규제를 수립하는 등 다양한 규제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한편, 새로운 사업모델로서 기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영역은 여전히 있을 수 있는데, 해당 P2P 보험서비스 제공업체는 금융소비자 보호절차 등 전통적인 규제가 적용되는 보험상품 판매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3) P2P 보험 규제에 관한 모범사례⁴⁹⁾

첫째, NCAs는 비인가 P2P 보험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경고를 위해, 정기적인 뉴스레터와 공지를 해야 한다. 둘째, NCAs는 P2P 보험플랫폼 제공업체들로 하여금, 보험상품 제공판매자가 아니므로 관련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공개하게 해야 한다. 또한, 독립된 분쟁해결 및 보호체제와 같은 일반적인 소비자 보호수단이 없다는 점도 명시해야 한다. 셋째, NCAs는 다양한 P2P 사업모델의 처리 및 각국의 허가방식에 대한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

6. 업무위탁(Outsourcing)

(1) 개요

보험사업은 전통적으로 보험상품판매, 손해사정, 전산시스템 구축관리 등 제3자에 대한 업무위탁이 활발한 분야인데, IT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보험 가치사슬 내 제3자에게 의존하는 정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첫째, 전통적인 보험환경을 벗어난 IT회사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여 저렴하고 효율적인 업무절차를 구현하는 점, 둘째, 소비자가 상품·용역에 단순 부가된 보험서비스를 구매하는 거래생태계 또는 플랫폼이 활성화되고 있는 점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⁵⁰⁾

49) Ibid. p. 31.

(2) 현행 아웃소싱 규제에 대한 EU 각국의 입장

대부분의 인슈어테크 스타트업들이 허가절차와 무관하게 아웃소싱 계약에 따라 보험회사와 협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아웃소싱 규제가 충분한지 설문 이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NCAs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으나, 일부는 Solvency II 체계에서 '본질적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아웃소싱 규제 역시 불분명하다는 입장이었다.⁵¹⁾ 또한 엄격한 규제로 인하여, 아웃소싱 형태로 보이지 않는 단순 제휴도 제한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⁵²⁾

Ⅲ. 보험업법상 진입규제 개요

1. 새로운 사업모델 등장과 진입장벽 문제

앞서 살펴본 것처럼 EIOPA는 인슈어테크 관련 다양한 사업모델의 진입규제에 있어서 동일행위 동일규제 및 비례원칙 적용을 강조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우선 국내 보험업법상 허가제의 현황과 취지를 개관하고, EIOPA 보고서 취지를 참고 하여 향후 다양한 모습으로 출현이 예상되는 위험보장 사업모델에 대한 규제의 방향성을 고찰해보기로 한다.

국내 보험산업의 인슈어테크 초기모델은 단순히 온라인 채널을 이용한 보험계약 체결에 그쳤으나, 현재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보장사항 적정성 확인,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한 재물건강정보 공유 및 이를 이용한 인수심사나 계약관리 등 다양한 비즈니스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인슈어테크 사업모델에 기반한 디지털보험사 신설,⁵³⁾ 보험회사가 의존하던 전통적인 판매채

50) Ibid., p. 32.

51) Ibid.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상 '본질적 업무'는 ①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 또는 다른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② 관련 법령에서 금융기관이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③ 업무의 위탁 또는 수탁으로 인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를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금융이용자의 피해 발생이 심히 우려되는 경우 등으로 제시된다(제3조 제1항).

52) Ibid.

53) 최근 보험회사가 설립한 디지털손보사로 캐롯손해보험과 하나손해보험이 있고 카카오페이는 2020년 12월 금융당국에 디지털손보사 설립 예비인가를 신청하여 2021년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행정절차

널 구조의 변화⁵⁴⁾ 등 격랑의 시기를 맞고 있다. 기존의 엄격한 보험산업 진입규제는 신규 사업자의 출현을 억제했고 이로 인해 혁신성 역시 미흡했다고 평가되었으나, 인슈어테크 활성화, 소액단기보험업 도입 등 산업환경의 변화로 새로운 파급효과들이 예상되고 있다.⁵⁵⁾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새로운 보험사업자의 출현 정도가 아니라, 기존 법제도가 예상하지 못한 P2P 보험과 같은 다양한 사업모델⁵⁶⁾ 또는 새로운 형태의 시장참여자가 향후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규제 측면에서 어떻게 합목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전적 검토가 요구되는 것이다.

2. 보험업법의 내용과 취지

(1) 보험업 진입규제의 배경

시장경제에서의 수요와 공급은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그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것으로 여겨져 왔고, 다만 시장지배력 남용이나 소비자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제공 등 시장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규제의 정당성이 인정된다.⁵⁷⁾ 그러한 규제 중 진입제한은 산업참여 또는 영업의 자유를 제약하는 원초적 규제로서 가장 강력한 효과를 지니는데, 사후 감독수단이 효과적이지 못한 경우 특히 필요할 수 있다.⁵⁸⁾

보험산업은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간 정보비대칭, 계약의 장기성(長期性)을 고려해야 하고, 경쟁으로 인한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악화 등 예방을 위해 진입규제

를 진행 중이며, 네이버와 토스 등도 보험시장 진출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진격의 카카오...디지털 보험사 판도 바뀌나”, *더팩트* 2021년 1월 7일 수정, 2021년 5월 15일 접속, <http://news.tf.co.kr/read/economy/1835925.htm>.

54) 현재 업계 1위 GA(독립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 소속 설계사가 약 1만5천명에 달하고 제판(제조 판매) 분리의 흐름에 따라 국내 대형 보험사들 역시 자회사형 GA 설립을 진행 중이다. “[산업리포트] 국내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 산업 분석”, *전자신문* 2021년 3월 30일 수정, 2021년 5월 15일 접속, <https://www.etnews.com/20210330000183>.

55) 김규동·김윤진, “보험산업의 디지털 현황과 과제”, 『KiRi Weekly』 Vol. 514, 보험연구원, 2021, 4면.

56) 금융위원회는 최근 새로운 사업모델로서의 P2P 보험 도입추진을 표명하였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 2021. 3. 2.

57) 하명호, “헌법재판과 행정법이론 - 진입규제의 수단으로서 허가특허를 글감으로-”, 『공법연구』 제 45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2016, 157-158면.

58)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2008, 18면; 하명호, 앞의 논문, 159-160면.

는 정당한 것으로 평가된다.⁵⁹⁾ 그러한 이유로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업을 위한 허가를 요건화하고, 허가 후에도 보험회사의 경영 전반을 감독하는 실질적 감독주의(實質的 監督主義)를 취하고 있다.⁶⁰⁾ 이는 무형의 미래재(未來財)이자 지식재(知識財)라는 보험상품의 특성에 비당한 소비자보호 필요성, 지급능력 확보 필요성 등에 근거한다.⁶¹⁾

(2) 주요 조항

보험업법 제2조 제2호는 보험업을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으로 정의하며, 동조 제6호는 보험회사란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로 명시한다.

보험업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생명보험(생명보험, 연금보험,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종목), 손해보험(화재, 해상, 자동차, 보증, 재보험,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종목), 제3보험(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종목) 등의 보험종목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 조 위반에 대하여는 법 제200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정의한다. 무허가 보험사업 행위는 동 법률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1962년 보험업법 제정 당시에도 보험사업은 면허가 필수요건이었고, 2003년 개정시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등 보험종목별 보험업 허가제도가 도입되었다. 보험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 상호회사, 외국보험회사로 제한

59) 김석영·오승연, “전문보험회사 활성화를 위한 진입규제 개선의 필요성”, 『KiRi Weekly』 Vol. 427, 보험연구원, 2017, 4-5면.

60) 김성태, 「보험법강론」, 법문사, 2001, 75-76면; 박세민, 「보험법」 제2판, 박영사, 2012, 25면; 정동운 대표편집, 「주석 상법(보험)」, 한국사법행정학회, 2015, 35면.

61) 김성태, 위의 책, 70-74면.

되며(제4조 제6항), 자연인이나 조합은 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⁶²⁾

허가심사 요건으로는 물적·인적 요건으로서 최소한의 자본금 또는 기금, 보험 계약자 보호와 보험업 수행을 위한 전산설비 구축과 보험업에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보험전문 인력과 전산요원 등이 요구된다.⁶³⁾ 특히 자본요건은 첫째, 보험회사의 물적·인적 기초를 갖추기 위한 사업자금 기능, 둘째, 설립 초기의 보험금 지급능력 담보기능이 있는 중요한 사항이다.⁶⁴⁾ 그리고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건전성,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 등도 심사대상에 포함된다.

(3) 보험업 허가의 본질

1) 허가의 법적 성격

허가란 법률에 의한 일반적 금지사항을 일정한 경우 해제하여 적법하게 사실 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행정행위,⁶⁵⁾ 또는 건축허가나 영업허가 처럼 법령에 의한 일반적 금지사항을 특정한 경우 해제하여 일정한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⁶⁶⁾ 등으로 설명된다. 전통적으로 허기는 개인의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명령적 행위’로서, ‘형성적 행위’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자유권은 공익목적으로 제한될 수 있고 이후 가부심사를 통해 자유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법적 지위 설정으로 볼 수도 있는 점에서 ‘형성적 행위’의 여지도 있으나, 기존 존재하는 자유를 회복시키는 것이므로 ‘명령적 행위’로 구분된다.⁶⁷⁾ 참고로 특허는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는 재량행위의 속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허가와의 차이가 있다.

2) 보험업 허가의 기속행위성과 비례원칙

우리 헌법상 개인 또는 법인은 경제적 기본권으로서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니고(헌법 제15조), 여기에는 직업수행의 자유 또는 영업의 자유가 포함된다. 보

62) 성대규, 앞의 책, 105면.

63) 보험업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등.

64) 성대규, 위의 책, 136면. 지급능력 요건은 금융감독의 대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수단이며, 채무초과에 따른 지급불능을 억제하는 기능을 지닌다. 김은경, 앞의 논문, 10면.

65) 김동희, 「행정법 I」 제24판, 박영사, 2018, 288-289면.

66) 정하중, 「행정법개론」 제13판, 법문사, 2019, 193면.

67) 김동희, 위의 책, 289면. 정하중, 위의 책, 194면.

험업 허가는 법인설립 자체의 제한은 아니며, 보험업 수행에 대한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 대한 허가는 언뜻 보기에 국가기관에 의한 수혜적 처분으로 오인의 여지가 있으나, 앞에서 본 것처럼 기본적으로 기존의 경제적 권리를 원상회복하는 명령적 행위이다. 따라서 해당 영업을 계속 금지할 질서유지 필요성이 없다면 금지를 해제해야 하고,⁶⁸⁾ 특히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행정청은 허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속행위 성격을 갖는다.⁶⁹⁾ 따라서 형식적으로 허가심사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업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⁷⁰⁾

이러한 보험업 허가제 운영에 있어서도, 일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비례적인 수단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비례원칙이 적용된다. 비례원칙은 목적 실현을 위한 적합한 수단을 요구하는 적합성 원칙, 다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요구하는 필요성 원칙, 일정 목적과 피해를 입는 다른 목적의 균형성을 요구하는 좁은 의미의 비례원칙(또는 법익균형성의 원칙)으로 구성된다.⁷¹⁾

IV. 인슈어테크에 대한 규제 검토

1. 동일행위에 대한 동일규제 원칙

(1) 동일행위 동일규제의 필요성

이상과 같이 보험업 영위를 위해서는 기속행위성을 지닌 명령적 행위로서 현행 보험업법상의 허가가 필요하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이후 P2P 보험 같은 보험유사 서비스 또는 현재는 예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보장 형태가 출현하는 경우, 그러한 허가의 대상인 보험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

68) 하명호, 앞의 논문, 174면.

69) 김동희, 앞의 책, 290면. 다만 건축법 제11조 제4항은 위락시설·숙박시설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대하여는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고려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처럼 법령에서 재량을 부여한 경우는 달리 판단될 수 있다. 정하중, 앞의 책, 195면.

70) 다만, 2000년 이전에 존재하던 '경제적 수요' 심사제 아래에서는 허가 거부 재량이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 성대규, 앞의 책, 113면.

71) 이준일, "헌법상 비례원칙", 「공법연구」 제37집 제4호, 한국공법학회, 2009, 26면. 비례원칙은 법치 국가 원리 및 기본권 제한의 헌법적 한계로서 도출되기도 한다. 헌법재판소 1990. 9. 3 자 89헌가 95 결정; 헌법재판소 1998. 5. 28 자 95헌바18 결정.

이 발생할 수 있다. 향후 이른바 빅테크(Big Tech) 기업이나 소규모 스타트업의 보험업 진출이 활성화되고 다양한 신규 사업모델이 출현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융합 또는 변형된 비정형 위험보장 상품, 여러 법령의 경계를 넘나드는 서비스의 경우 준거규제가 모호한 상황이 야기되며,⁷²⁾ 규제차익 방지 등 제도적 대처가 문 제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업권별 규제체계로써는 규제차익 및 불공정경쟁을 방지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⁷³⁾ 기준 법령이 모호하거나 사업모델이 여러 업 권에 걸쳐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업종의 형태로 출범하여 규 제차익을 누리려고 할 수도 있다.⁷⁴⁾ 이에 따라 업종별 규제체계가 아닌 기능별 규제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이 주장되고,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의 적용이 강조되 고 있다.⁷⁵⁾

(2) 횡단적 규제체계의 의미와 사례

횡단적 또는 기능별 규제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근거하여 업종을 불문 하고 동일한 금융기능은 일관된 기준으로 규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자유로운 영 업활동은 허용하되 규제차익을 해소하려는 취지에서 출발한다.⁷⁶⁾ 특히 최근 해외 에서는 대형 플랫폼사업자나 빅테크의 금융시장 진입시 발생할 수 있는 독점화, 개인정보 보호 문제, 알고리즘의 편향적 운영 등에 대응한 포괄적 규제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⁷⁷⁾

72) 김홍기, “자본시장통합법상 파생상품 규제의 내용과 개선과제”, 「증권법연구」 제9권 제1호, 한국증 권법학회, 2008, 94면.

73) 이효경, “금융서비스분야에서 플랫폼비즈니스의 법적 이슈 및 앞으로의 과제 - 횡단적 규제체계, 오픈뱅킹을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제33권 제3호, 한국기업법학회, 2019, 331면.

74) 經濟産業省, 『プラットフォームを巡る法的論点』, 株式会社NTTデータ経営研究所, 2018年, 119頁.

75) 김홍기, 위의 논문, 114면; 이효경, 위의 논문, 347면;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디지털 금융혁신 및 빅테크-금융사간 “상호상생”의 논의의 장인「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출범하였습니다”, 2020. 9. 10. 독일 연방금융감독청(BaFin)도 혁신적 금융기술에 대한 제도적 접근방식으로 ‘동일사업, 동일위험, 동일규제(same business, same risk, same regulation)’를 원칙으로 한다. 김두진, “디지털 경제와 핀 테크 -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비교사법」 제26권 제3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9, 303면.

76) 김자봉, “일본의 기능별 횡단적 금융규제 논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주간 금융브리프」 제28권 제14호, 한국금융연구원, 2019, 15면.

77)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제5차「디지털금융 협의회」개최”, 2020. 12. 10.

과거 국내 자본시장 규제는 기관별 규제체계(institutional regulation)로서 증권·선물·자산운용·신탁회사 등 금융기관 종류별로 법률이 존재하고 각 법률마다 진입규제, 영업행위규제, 건전성규제 등을 담고 있었으나,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금융투자회사의 취급기능 금융투자상품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기능별 규제체계(functional regulation)를 채택하였다.⁷⁸⁾ 한편, 2020년 3월에는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반영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도 제정되었는데, 동법은 금융상품 유형을 예금성·투자성·대출성·보험성 등으로 분류하는 등 규제사 각지대를 제거한 기능별 규제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⁷⁹⁾ 다만, 동법이 기능별 규제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더라도, 최근 금융분야에서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플랫폼사업자나 빅테크의 규제공백에 대한 면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⁸⁰⁾

(3) 인슈어테크 위험보장 사업모델에 대한 동일규제

위와 같이 동질적 위험에 대하여는 동일한 규제가 뒤따라야 하므로, 위험보장 제도로서의 '보험' 역시 거래의 실질을 합목적적으로 검토하여 규제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⁸¹⁾ 즉, 보험 관련 법률이나 규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험성(保險性) 판단에 있어서는, 위험의 이전·분산 기능 존재와 함께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보장기능 제공, 규제 필요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⁸²⁾ 이러한 보험 유사제도를 규제범위 외에 방지하는 것은 예측하지 못한 소비자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또한

78) 김흥기, 앞의 논문, 85-86면.

79) 최병규,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의 쟁점과 과제”, 『재산법연구』 제37권 제3호, 한국재산법학회, 2020, 191면. 일본의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 취지의 기존 금융상품판매법을 2020년 금융서비스제공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금융서비스중개업을 신설하였는데, 은행·증권·보험의 규제영역에 횡단적인 규제를 부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효경, “일본의 금융서비스제공법과 우리나라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규제 시사점”, 『상사법연구』 제39권 제4호, 한국상사법학회, 2021, 279-280면.

80) 최병규, 위의 논문, 191면. 사업주체기반 규제(entity-based regulation)에서 행위기반 규제(activity-based regulation)로 일률적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적으로 타당한 것은 아니다. 금융규제의 최종적 목표는 공정경쟁의 장(場) 그 자체가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이나 무결성, 소비자 보호 등인데, 현재의 규제체계에서는 이른바 빅테크 기업에 특화된 규제를 부과하는 보완적 방안의 필요성도 제시되고 있다. Fernando Restoy, “Fintech regulation: how to achieve a level playing field”, *Occasional Paper*, No. 17, BIS, 2019, p. 20.

81) 김성태, “보험개념의 구성요소”, 『보험학회지』 제37집, 한국보험학회, 1991, 128-129면.

82) 박세민, “용역(서비스) 제공계약의 보험상품성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보험법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보험법학회, 2020, 66면.

일종의 규제차익도 파생시킬 수 있다.⁸³⁾

법원은 보험업의 정의에 관하여 단체성·사회성, 국가사회경제 영향도를 고려하여 사업명칭이나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고찰해야 한다는 점을 판시한바 있다.⁸⁴⁾ 결국 유연성과 불확실성을 띤 사고를 조건으로 경제적 이익이 급부되는 사업모델은 원칙적으로 보험업 규제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⁸⁵⁾ 앞서 EIOPA의 보고서 역시, 보험사업자가 개입하지 않는 플랫폼 기반 위험보장서비스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사업자와 유사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즉, 기존의 보험제도와 동일한 경제적 수요에 대응한 형태이므로 보험에 관한 전통적인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⁸⁶⁾ 결론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인슈어테크 사업모델에 대하여 기존 규제의 적용 여부에 모호한 점이 있다(라도,⁸⁷⁾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궁극적으로 위험보장기능을 수행하고 다수의 소비자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보험업 허가 및 기타 거래행위 규제의 검토대상이 되어야 한다. IT 기업이 단순한 플랫폼 역할만 수행한다고 항변하더라도 위험보장의 기능을 매개한다면, 소비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보험자의 역할로 충분히 오인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업 허가에 관한 규제 부가가 검토되어야 하고 또한 해당 사업수행 및 소비자 피해복구를 위한 최소자본요건이 필요한 것이다.⁸⁸⁾ 또한 사업영위 과정의 부실로 인한 시장질서 저해를 방지하기 위한 건전성 규제도 필요할 수 있으며, 사업자에 관한 재무적 건전성 유

83) 김화중, 앞의 논문, 155면; 박세민, “중고휴대폰 보상서비스의 보험상품성 여부에 대한 연구”, 『고려법학』 제92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198면.

84)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도2172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13558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10457 판결.

85) 김성태, 앞의 논문, 122-124면. 보험업법상의 보험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수요 충족인지 아니면 단순한 일정금액 지급인지, 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이 준수되는지, 대수의 법칙이 전제되는지 등의 기준도 제시된다. 이기수·최병규·김인현, 『보험·해상법』 제9판, 박영사, 2015, 7면.

86) 보험소비자 보호라는 근본 목적을 위해 EU의 IDD도 그 제정취지로 판매채널에 대한 동일기준 규제를 제시하고 있다. Margarida Lima Rego, “Insurance in Today’s Sharing Economy: The IDD Impact”, accessed Apr 12, 2021, <http://www.aida.org.uk/docs/Lima-Rego-Presentation.pdf>.

87) 동일행위 동일규제의 원칙은 자본 및 금융시장 규제의 기본원칙이지만, 블록체인 활용과 같은 DeFi(Decentralized Finance), 즉 탈중앙화 금융의 시대에서는 규제대상의 동일성에 대한 식별이 곤란해질 수는 있다. “Same business, same risks, same rules - A still valid concept?”, *So & Sato Law Offices*, last modified Dec 8, 2020, accessed May 13, 2021, <https://innovationlaw.jp/en/same-business-same-risks-same-rules>.

88) 김화중 앞의 논문, 164-165면.

지의무나 정기적 평가제도의 검토도 필요하다.⁸⁹⁾

다만, 위와 같이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을 유지하더라도, 인슈어테크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그 엄격성 정도는 조절될 필요는 있다. 기존 규제가 예정하지 않던 새로운 사업모델이 소비자 후생을 비약적으로 증대시키는 경우, 전향적인 해석 필요성도 요구되기 때문이다. 디지털 금융의 효율적 규제를 위한 국제적 정합성 추구나 해외의 경쟁정책이나 플랫폼규제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성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는데,⁹⁰⁾ 이는 상황에 따른 규제적용의 유연성을 포함하는 맥락이기도 하다. 이하에서는 규제 탄력성의 바탕이 되는 비례원칙에 관하여 검토해보기로 한다.

2. 비례원칙의 적용

(1) 인슈어테크 모델에 대한 규제강도의 문제

위험보장 상품에 대한 동일규제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전통적인 법체계가 요구하는 모든 제어장치를 부가할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앞서 본 EIOPA 보고서 역시 그러한 측면에서 비례원칙을 통한 탄력적 대응을 강조한바 있다.

만일 인슈어테크 사업모델에 대한 현행 규제보다 소비자후생을 더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가능하다면, 현행 규제는 규제의 합리성을 실현하는 원리로서의 비례원칙을 실현하지 못하는 것이다.⁹¹⁾ 이는 경제학상의 파레토 최적(Pareto efficiency)과 같은 개념인데, 새로운 규제신설의 파레토 개선효과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다.⁹²⁾ 비례원칙은 보험업 진입규제뿐만 아니라 행위규제에도 적용되는데, 보험계약 체결이나 보험금 지급과정, 소비자 보호제도 등⁹³⁾ 제반 절차에 있어서

89) 김화중, 위의 논문, 166면.

90) 김자봉, 앞의 논문, 16면.

91) Grant Huscroft, Bradley W. Miler, and Gregoire Weber, Introduction, Proportionality and the Rule of Law, Cambridge, 2014. p. 11(김자봉, “증권규제 비례원칙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미국 증권법과 국내 자본시장법상 ‘민사적 금전제재(과징금)’에 대한 법경제학적 논의를 중심으로”, 「KIF 금융분석보고서」 Vol. 2019 No. 2, 한국금융연구원, 2019, 7면 각주 13 재인용).

92) Grant Huscroft et al, op. cit., p. 11.

93) 새로운 인슈어테크 사업모델의 경우, 전통적인 보험상품 또는 서비스와 상이한 점을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사전 고지가 중요하며, 또한 기존의 금융소비자보호 수단의 적용대상이 아닐 수도 있는 점도 미리 알리고 확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김화중, 앞의 논문, 167면.

그 위험이나 부작용 가능성에 비례한 규제설정이 필요하다. 비례원칙에 근거한 규제강도 조절의 구체적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2) 비례원칙 적용의 필요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와 소규모 신생기업이나 스타트업의 시장진입 활성화 화라는 정책적 요구사항, 허가의 ‘명령행위’ 성격을 고려할 때, 보험업 허가주의 운영에 있어서 보다 탄력적인 운영이 요구된다.⁹⁴⁾ 허가제의 근본취지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존 법정요건의 제도적 완화 또는 유연한 해석 등 적극적인 행정작용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보험업법의 근본 가치는 소비자 보호와 보험시장 건전성이지만, 그에 대한 결정적 위해요소가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한 인슈어테크 환경 아래에서 즉각적이고 신축성 있는 제도운영이 필요하다. 새로운 사업모델은 당연히 소비자권익이나 시장에 대한 피해야기 가능성이 완벽히 검증될 수는 없는데, 그 이유로 기존의 모든 진입장벽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

물론 불측의 소비자 피해를 불러올 가능성이 일부라도 있다면 신중한 검토는 필요하며, 비례원칙 적용에 있어서도 가장 효과적인 수단과 최소피해 수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최소피해 원칙에 따라 후자를 택해야 한다.⁹⁵⁾ 그러나 언제나 최소피해 원칙이 우선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적합성 원칙 및 법익균형성 원칙을 함께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선택할 수도 있다.⁹⁶⁾ 특히 인슈어테크 사업모델에 일부 부정적 가능성이 있더라도, 발생소지가 다분한 개연성(蓋然性)에 못 미친다면 그 실험적 운영은 최근의 기술제도 융합의 동태성(動態性)에 비추어 오히려 장려될 필요가 있다. 지나친 법적 안정성 추구로 미지 영역에 대한 막연한 제도적 회피는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기술변화에 따른 규제 원리로서, 과학적 분석에 따른 리스크 검토와 이를 근거로 한 제도적 조치 등 합리성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⁹⁷⁾

제도적 회피에서 더 나아가, 선부른 규제부가 역시 산업발전과 창의성 억제,

94)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기반하여 특정 보험종목을 다루는 전문보험회사 활성화 필요성은 기존에도 주장되었으나, 진입규제와 가격규제가 저해요인이었다. 김석영·오승연, 앞의 논문, 4면.

95) 이준일, 앞의 논문, 31면.

96) 이준일, 위의 논문, 32면.

97) 최정윤·김형섭, 앞의 논문, 58면.

중국적으로 금융소비자 부담을 증가시키는 근시안적 정책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유의해야 한다.⁹⁸⁾ 또한 기술적 중립성에 바탕해야 하는데, 현재의 IT 기술이나 장래 발전상황을 선불리 예측하여 일률적인 정책적 기준을 만들어서는 안 되며,⁹⁹⁾ 기술발전이나 다변화를 감안한 융통성 있는 규범정립이 필요하다. 특히 혁신기술과 금융의 융합현상에 대한 금융규제는 시장경쟁 촉진과 반비례의 관계가 될 수 있으며, 따라서 규제와 경쟁 간의 적절한 균형을 늘 고려해야 한다.¹⁰⁰⁾

이처럼 경제현상과 규범의 괴리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업 진입규제 운영에 있어서 비례원칙 적용이 중요하다. 그러한 비례원칙이 구현되는 모습은 예를 들어 자본요건 등 기존 허가요건의 완화나 잠정적 예외 인정, 원천적인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행위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자본요건의 경우 소규모 스타트업 등 신규 사업자에게 현행 보험업법의 자본금 요건 등 과도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가입자 규모 등 위험에 비례한 금액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¹⁰¹⁾ 실제로 보험사업자로서의 자본요건은 신생 스타트업의 시장진입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OECD 각국에서도 보험업 라이선스를 실제로 취득한 인슈어테크 스타트업은 희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¹⁰²⁾ 한편 최근 법개정을 통해 도입된 규제샌드박스, 소액단기보험업은 위와 같은 비례원칙이 인슈어테크 진입규제와 관련되어 제도적으로 반영된 모습으로 볼 수 있다.

98) 정경영,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한 법적 대응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제29권 제4호, 성균관대 법학연구원, 2017, 322-323면.

99) 정경영, 위의 논문, 323면.

100) OECD(2017), *Technology and innovation in the insurance sector*, p. 29.

101)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중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른바 ‘P2P 대출법’)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록제, 최소자본 5억원, 대출총액에 비례한 단계적 자기자본 규모(시행령 제3조 제1항)는 참고할만한 사항이다. 김화중, 앞의 논문, 165-166면.

102) OECD(2017), op. cit., p. 29; Victoria Chatzara, FinTech, InsurTech, and the Regulators. In: Marano P., Noussia K. (eds) *InsurTech: A Legal and Regulatory View*. AIDA Europe Research Series on Insurance Law and Regulation, vol 1. Springer, Cham, p. 9.

(3) 규제 측면의 탄력적 대응수단

1) 규제샌드박스의 활용

가) 규제샌드박스의 의의

기술발전에 따른 규제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기술로 이른바 ‘실험조항 (Experimentierklausel)’이 활용될 수 있다.¹⁰³⁾ 규제샌드박스 형태로도 운영되며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일정 조건의 제도적 환경에서 검증할 수 있게 하고, 그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안전성이 검증되면 법령을 개정하게 된다.¹⁰⁴⁾ 이는 위험기반 규제접근이라는 감독원칙을 전지하되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방법론이기도 하다.¹⁰⁵⁾ 다만,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에서, 규제샌드박스 운영대상 판단에 있어서 혁신 정도나 소비자 후생증대 효과 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¹⁰⁶⁾

한편, 국내에서는 2019년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운영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아이디어의 사전적 검증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제 금융데이터를 핀테크 기업에 접목하여 시험해보는 ‘디지털 샌드박스’ 도입도 발표되었다.¹⁰⁷⁾

나)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과 그 배경

과거에는 법령해석의 모호성이나 장애가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 유권해석이 나 비조치의견서, 모범규준 등을 통해 기준이 정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¹⁰⁸⁾

103) 이러한 실험조항은 ‘예외적 승인’의 성격을 지니는데, 입법자로서는 실험조항의 취지에 맞도록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세부규율을 제정하고 규범화할 의무가 있다. 이에 관하여는 김태오, 앞의 논문, 87-107면.

104) 배병호, “이른바 규제샌드박스 관련 4대 법률에 대한 입법 평가”, 『토지공법연구』 제87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19, 765면. 규제샌드박스는 제한적 상황 또는 일정조건에서만 규제집행이 정지된다는 점에서, 특정 조건과 무관하게 일정기간 집행을 중단하는 규제유예와는 구별된다. 안수현, “금융분야에서의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도입과 법적 과제 : 『금융혁신지원특별법(안)』을 소개로”, 『상사판례연구』 제31집 제3권, 한국상사법학회, 2018, 145면.

105) 안수현, 위의 논문, 188면. 기술혁신 측면의 위험성에 대한 국가의 사전적 개입은 위험방지를 위한 전통적인 국가 개입과는 질적으로 다른 불확실성을 가지므로, 비례원칙을 고려하여 제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최정윤·김형섭, 앞의 논문, 57면.

106) 영국 금융감독청(FCA) 규제샌드박스의 경우, 기존과는 획기적으로 다른 모습의 혁신, 작·간접적 경쟁촉진을 통한 소비자이익 기여, 샌드박스 테스트의 진정한 필요성에 대한 입증을 요구한다. Jonathan R. Everhart, “The fintech sandbox: An overview of regulatory sandbox regimes”, *Southern Journal of Business & Ethics*, Vol. 12, 2020, p. 72.

107) 영국 FCA는 2020년 5월부터 민간 CB의 가상데이터 등을 활용한 디지털 샌드박스를 운영 중이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2021. 1. 19.

이를 통한 현재의 규제샌드박스와 유사한 제도운영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 모범규준이나 행정지도는 금융당국의 자의가 개입할 여지가 큰 '비명시적 규제'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고, 이를 포괄하여 극복할 수 있는 금융규제혁신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¹⁰⁹⁾ 또한 유권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 역시 법적 근거가 금융위원회 고시에 불과하여, 금융시장이나 소비자 영향이 큰 제도변경의 근거로 삼기는 미약한 면이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2018년 제정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상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는 규제샌드박스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동법에 의한 규제샌드박스는 소비자 편익증대를 지향하여 획일적 진입장벽을 유연하게 전환해주고, 테스트 과정의 시행착오나 정보를 규제개선의 증거자료로 활용하게 해주는 수단도 된다.¹¹⁰⁾

물론 현행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한 모든 기술적이고 세밀한 방안을 담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이는 일부 정책판단의 여지를 두어 혁신적 상품서비스에 대한 적시성 있는 정책대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으로 판단된다.¹¹¹⁾

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주요 내용

혁신금융서비스란 기존 금융서비스의 내용·방식·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관련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이며(제2조 제4호), 금융위원회는 지정사항에 해당하면 2년의 범위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다(제4조). 혁신금융사업자가 지정기간내 영위하는 혁신금융서비스는 인허가 등록 신고, 사업자 지배구조·업무범위·건전성·영업행위 및 감독검사와 관련 있는 금융 관련 법령 중 특례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제17조 및 제24조). 또한 혁신금융사

108) 법령유권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는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금융위원회 고시)에 근거한다.

109) 성대규, 「그림자 금융규제」, 성문기획, 2015, 294면.

110) 안수현, 앞의 논문, 187-189면. 규제샌드박스 안에서 실험적 운영을 하더라도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위험의 발생가능성은 잔존하기 때문에, 다수 소비자들을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단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김두진, 앞의 논문, 314면.

111) 다만, 동법의 세부 내용에 있어서, 혁신금융사업자 신청자격을 금융회사 또는 상법상 회사로 제한하는데, 이는 신생 스타트업이나 핀테크 업체에 진입장벽이 될 수도 있다. 맹수석,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쟁점과 개선 방안", 「상사법연구」 제38권 제1호, 한국상사법학회, 2019, 312면.

업자가 지정을 거쳐 인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를 배타적으로 운영할 권리를 가진다(제23조).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 이후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에 법령 제·개정을 권고할 수 있다(제13조 제5항).

2) 소액단기전문보험업의 활용

일본은 각종 공제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해결을 위해 2006년 보험업법 적용범위 개정 후 공제를 소액단기보험업으로 등록하게 하였는데, 이러한 방안이 국내에서도 공제 규제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적이 있었다.¹¹²⁾ 현재 반려견보험 등 다양한 상품이 일본에서 활성화되고 있고, 2019년 기준으로 약 100여개의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가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¹¹³⁾

국내의 경우 2020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제9조 제2항)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가 도입되었는데, 실생활밀착형 소액간단보험을 취급대상으로 한다. 기존에는 보험업 진입을 위한 고액의 자본금 요건¹¹⁴⁾으로 소규모 위험만을 전문으로 하는 보험회사 설립은 사실상 불가능했다.¹¹⁵⁾ 이러한 자본금 요건 역시 인수하는 보험

112) 소액단기보험업의 필요자본금은 일반 보험회사의 1/10 수준인 1,000만엔이고, 연간 수입보험료 50억엔 이내만 등록이 가능했다. 이기형, “일본 소액단기보험업의 국내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KiRi Report』 제178호, 보험연구원, 2012, 8면.

113)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일상생활과 밀접한 미니보험(반려견보험, 여행자보험 등)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의 자본금 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0. 11. 29. 한편, 일본 사례에서 특기할만 점은 예를 들어 도쿄해상홀딩스는 비전속보험대리점 채널에 특화된 니신화재, 인터넷자동차보험에 특화된 이디자인 보험, 주택화재나 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소액단기 보험회사인 도쿄해상미라이보험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점이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험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결과 및 정책 추진방향”, 2021. 2. 8. 반면, 국내는 현재 1개 금융그룹은 생·손보 각각 1개의 라이선스만 가능하고 복수의 라이선스를 얻기 위해서는 엄격하게 판매 채널을 분리해야 하는데, 금융위원회는 2021년 상반기 ‘1사 1라이선스’ 유연화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예정임을 발표하였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 2021. 3. 2.

114) 생명보험 200억원, 자동차보험 200억원, 질병보험 100억원, 도난보험 50억원이며, 다만 생·손보 별 모든 보험종목 취급시 300억원이 요구된다. 한편, 일부 보험종목을 영위하기 위한 최저자본금이 50억 이상이라는 점에서 프랑스 등 해외에 비해 과도한 규제이며 이로 인한 대외경쟁력 저하도 우려되므로 재고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백정웅, 앞의 논문, 373면.

115) 2003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전화컴퓨터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모집을 하는 보험회사의 자본요건이 별도 규정되었지만 법률상 자본금 기준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이 역시 소액간단보험에 관한 보험회사에 적용하기는 적합하지 못했다.

사업의 규모나 위험성에 상응한 비례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¹¹⁶⁾ 최근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소액단기보험을 수행할 사업주체에 대한 별도의 허가요건은 미비했었다. 이에 개정 보험업법 제9조 제2항은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10억원 이상의 일정 범위로 하향시켰고 최소자본금을 20억원으로 하는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¹¹⁷⁾ 기존의 엄격한 보험업 진입규제를 완화한 제도적 대처로서, 향후 인슈어테크 기반 새로운 판매형태 출현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반려동물보험, 레저·여행보험, 날씨보험, 변호사보험 등 기존에 소외되었던 상품 측면의 활성화도 기대된다.¹¹⁸⁾

3) 보험회사 업무위탁 제한의 완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은 인가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는 외부위탁을 금지하는데, 보험회사의 경우 인수심사, 보험금 지급심사 및 결정 등이 그러한 본질적 업무로 예시된다(제3조). 동 규정은 업무위탁 기준, 현황보고 등에 관한 절차적 기준도 규제하는데, 실무상 빈번하게 문제되는 쟁점은 특정 업무가 보험회사 외부로의 위탁(out-sourcing)이 가능한지 여부이다.¹¹⁹⁾

인슈어테크를 활용하여 보험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IT기업이나 소규모 스타트업은 실제로는 상품개발이나 인수심사(underwriting), 보험금 지급심사 등 보험업무의 일부에 국한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영위 수요가 많다. 그런데, 해당업무가 현행 금융기관의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상 보험업의 본질적 업무로 분류되는 항목이라면, 기존 보험회사로부터의 업무수탁도 불가하고 결국은 공식적인

116) 국제 보험감독자기구(IAIS) 역시 요구자본 총측기준상 보험사업자의 리스크 특징, 규모, 복잡성을 감안한 비례원칙 적용을 권고한 바 있다. 김석영·오승연, 앞의 논문, 8면.

117) 연금간병 등 장기간 보장, 원자력·자동차 등 높은 자본이 필요한 종목 외에는 모든 종목을 허용했으며, 보험기간 1년, 보험금 상한액 5천만원, 연간 총 수입보험료 상한 500억원으로 설정하였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반려동물(640만 가구), 레저·여행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소액단기보험이 활성화됩니다」, 2021. 5. 25.

118) 금융위원회, 위의 보도자료, 참고로 기존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부담할만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정책적으로 위험보장 혜택을 제공하는 마이크로보험(micro insurance)은 가입 편리성, 단기 보험기간, 소액보험금, 통계적근거 미비, 보험금청구절차 신속성이 있는데, 소액단기보험으로 운영되어 그 구별이 곤란할 수도 있다. 김선정, 「마이크로보험을 통한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 및 국외시장진입의 법적 과제」, 「무역보험연구」 제18권 제2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17, 2-8면.

119) 김화중, 앞의 논문, 180면.

보험업 허가를 득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본질적 업무 위탁제한의 취지는 해당 금융업의 핵심업무를 검증되지 않은 수탁업체가 수행하는 경우 거래질서나 소비자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소액·단순업무로서 위탁을 통한 소비자 편이이나 효율성 제고가 크고 부정적 영향 가능성이 미미하다면 허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¹²⁰⁾ 금융위원회 역시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규제 등에 특례를 부여하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금융회사가 핀테크 등 외부업체에 본질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대리인제도 등을 최근 운영하고 있다.¹²¹⁾ 보험시장의 거래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의 이러한 업무위탁 확대는, 기존의 엄격한 보험업 허가주의 아래에서도 좀더 다양한 인슈어테크 사업모델이 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V.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인슈어테크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EU의 제도적 고민이 담긴 2019년 EIOPA 보고서를 중심으로 우리의 보험규제상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해 보았다. 최근까지도 EU 상당수 국가들이 기존 보험회사와 별도로 인슈어테크 스타트업을 규제하거나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U 조차도 새로운 인슈어테크 사업모델에 대하여 여전히 규제의 모호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추후 발전현황에 따라 규제가 정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그럼에도 EIOPA 보고서에 담겨 있는 최소한의 전제는 바로 동일행위에 대한 동일규제 원칙과 공정한 경쟁의 장(場)이다. 즉, 혁신축진이 무조건적인 규제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¹²²⁾ 규제대상과 비대상 영역에서 비슷한 사업유형이 각각 구축되더라도 이로 인해 보험소비자 보호까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

120) 김화중, 앞의 논문, 184면.

12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 핵심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 제도가 개선됩니다.” 2019. 1. 22.

122) 김두진, 앞의 논문, 303-304면.

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슈어테크 비즈니스 모델의 현행규제 수범대상 여부가 모호할 지라도, 위험보장의 경제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동일한 기능이라면 규제차익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규제영역 안으로 끌어와야 한다.

이처럼 인슈어테크 사업모델에 대하여 기존 진입규제·행위규제를 적용하더라도 비례원칙을 투영한 유연한 제도적 대처는 고려할 수 있다. 인슈어테크 관련 기술 제도 융합의 동태성(動態性)을 고려하고, 새로운 사회적 효용과 위험성 간의 비교형량에 바탕하여 정교한 감독적 대처가 필요한 것이다.¹²³⁾ 보험업 진입규제에 있어서 비례원칙은 예를 들어 허가요건 완화나 잠정적 예외 인정, 자본금 규모 조정도 들 수 있는데, 인슈어테크 진입규제와 관련하여 규제샌드박스나 소액단기 보험업은 비례원칙이 제도적으로 반영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위와 같은 규제의 기본원칙 하에 출현 가능한 다양한 사업모델에 대한 각론상의 검토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4차 산업혁명의 정책적 대응을 위해서는, 새로이 출몰하는 다양한 사업 모델에 대한 적시성 있는 법·제도적 분석과 시장과의 열린 소통이 필요하다. 인공지능이나 분산대장기술 같은 신기술, 빅테크 주도 보험사업 등 역동적인 시장 환경 대응을 위한 학계, 보험업계, 감독기관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이다.

123) 맹수석, 앞의 논문, 321면.

참고문헌

<국내문헌>

1. 단행본

- 김동희, 「행정법 I」 제24판, 박영사, 2018.
- 김성태, 「보험법강론」, 법문사, 2001.
- 박세민, 「보험법」 제2판, 박영사, 2012.
- 성대규, 「한국보험업법」 개정판, 두남, 2012.
- _____, 「그림자 금융규제」, 성문기획, 2015.
- 이기수 최병규 김인현, 「보험-해상법」 제9판, 박영사, 2015.
- 정동운 대표편집, 「주식 상법(보험)」, 한국사법행정학회, 2015.
- 정하중, 「행정법개론」 제13판, 법문사, 2019.
-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2008.

2. 논문

- 김규동 김윤진, “보험산업의 디지털 현황과 과제”, 「KiRi Weekly」 Vol. 514, 보험연구원, 2021.
- 김두진, “디지털 경제와 핀테크 -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비교사법」 제26권 제3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9.
- 김석영 오승연, “전문보험회사 활성화를 위한 진입규제 개선의 필요성”, 「KiRi Weekly」 Vol. 427, 보험연구원, 2017.
- 김선정, “마이크로보험을 통한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 및 국외시장진입의 법적 과제”, 「무역보험연구」 제18권 제2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17.
- 김성태, “보험개념의 구성요소”, 「보험학회지」 제37집, 한국보험학회, 1991.
- 김은경, “Solvency II와 보험감독체계의 변화”,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학술발표논문집」, 한국금융소비자학회, 2012.

- 김자봉, “일본의 기능별 횡단적 금융규제 논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주간 금융브리프」 제28권 제14호, 한국금융연구원, 2019.3
- _____, “증권규제 비례원칙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미국 증권법과 국내 자본시장법상 ‘민사적 금전제재(과징금)’에 대한 법정제학적 논의를 중심으로-”, 「KIF 금융분석보고서」 Vol. 2019 No. 2, 한국금융연구원, 2019.
- 김태오, “기술발전과 규율공백, 그리고 행정법의 대응에 대한 시론적 고찰”, 「행정법연구」 제38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4.
- 김해식·임준환, “EU 보험시장 진입의 열쇠, Solvency II 동등성 인정 제도”, 「KiRi Weekly」 Vol. 416, 보험연구원, 2017.
- 김흥기, “자본시장통합법상 파생상품 규제의 내용과 개선과제”, 「증권법연구」 제9권 제1호, 한국증권법학회, 2008.
- _____,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 3년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제도개선 방향”, 「금융법연구」 제16권 제3호, 한국금융법학회, 2019.
- 김화중, “P2P 보험의 법적 성격과 규제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1.
- 맹수석,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쟁점과 개선 방안”, 「상사법연구」 제38권 제1호, 한국상사법학회, 2019.
- _____, “인슈어테크와 보험법적 쟁점”, 「보험법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보험법학회, 2020.
- 박세민, “중고휴대폰 보상서비스의 보험상품성 여부에 대한 연구”, 「고려법학」 제92호, 고려대 법학연구원, 2019.
- _____, “용역(서비스) 제공계약의 보험상품성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보험법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보험법학회, 2020.
- 배병호, “이른바 규제샌드박스 관련 4대 법률에 대한 입법 평가”, 「토지공법연구」 제87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19.
- 백정웅, “프랑스 보험업규제와 그 시사점”, 「비교사법」 제23권 제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6.
- 인수현, “금융분야에서의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도입과 법적 과제 : 『금융혁신지원특별법(안)』을 소재로”, 「상사판례연구」 제31집 제3권, 한국상사법학회, 2018.
- 이기형, “일본 소액단기보험업의 국내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KiRi Weekly」 Vol. 178, 보험연구원, 2012.

- 이준일, “헌법상 비례원칙”, 『공법연구』 제37집 제4호, 한국공법학회, 2009.
- 이효경, “금융서비스분야에서 플랫폼비즈니스의 법적 이슈 및 앞으로의 과제 - 횡단적 규제 체계, 오픈뱅킹을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제33권 제3호, 한국기업법학회, 2019.
- _____, “일본의 금융서비스제공법과 우리나라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규제 시사점”, 『상사법연구』 제39권 제4호, 한국상사법학회, 2021.
- 장경원, “EU 행정법상 비례원칙”, 『행정법연구』 제34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2.
- 정경영,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한 법적 대응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제29권 제4호, 성균관대 법학연구원, 2017.
- 채형복, “유럽공동체법의 일반원칙으로서 비례원칙과 공동체의 권한 행사의 한계”, 『국제법학회논총』 제51권 제2호, 대한국제법학회, 2006.
- 최명규,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의 쟁점과 과제”, 『재산법연구』 제37권 제3호, 한국재산법학회, 2020.
- 최정윤·김형섭, “초연결사회에서의 합리적 규제완화 방안 - 규제샌드박스를 중심으로.”, 『법과 정책연구』 제19집 제4호, 한국법정책학회, 2019.
- 하명호, “헌법재판과 행정법이론 - 진입규제의 수단으로서 허가특허를 글감으로.”, 『공법연구』 제45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2016.
- 홍대식,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경제 정책”, 『법학연구』 제31권 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3. 기타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 2021. 3. 2.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험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결과 및 정책 추진방향”, 2021. 2. 8.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1 금융위 업무계획」中 디지털금융 혁신 세부과제”, 2021. 1. 28.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2021. 1. 19.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제5차「디지털금융 협의회」개최”, 2020. 12. 10.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일상생활과 밀접한 미니보험(반려견보험, 여행자보험 등)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의 자본금 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0. 11. 29.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디지털 금융혁신 및 빅테크-금융사간 “상호상생”의 논의의 장인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출범하였습니다”, 2020. 9. 10.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반려동물(640만 가구), 레저·여행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소액단기보험이 활성화됩니다”, 2021. 5. 25.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0년 금융산업 혁신추진계획”, 2020. 3. 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 핵심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 제도가 개선됩니다.” 2019. 1. 22.

“진격의 카카오...디지털 보험사 판도 바뀌나.”, 더팩트 2021년 1월 7일 수정, 2021년 5월 15일 접속, <http://news.tf.co.kr/read/economy/1835925.htm>.

“[산업리포트] 국내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 산업 분석.”, 전자신문. 2021년 3월 30일 수정, 2021년 5월 15일 접속, <https://www.etnews.com/20210330000183>.

<외국문헌>

經濟産業省, 『プラットフォームを巡る法的論点』, 株式会社NTTデータ経営研究所, 2018年.

Chatzara V. (2020) FinTech, InsurTech, and the Regulators. In: Marano P., Noussia K. (eds) *InsurTech: A Legal and Regulatory View*. AIDA Europe Research Series on Insurance Law and Regulation, vol 1. Springer, Cham.

EIOPA, “Report on best practice on licensing requirements, peer to peer insurance a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an insurtech context”. 2019.

Eurofound, last modified Mar 11, 2007, accessed May 15, 2021, <https://www.eurofound.europa.eu/observatories/eurwork/industrial-relations-dictionary/acquis-communautaire>.

Everhart, Jonathan R. “The fintech sandbox: An overview of regulatory sandbox regimes.” *Southern Journal of Business & Ethics* Vol. 12, 2020.

Fjelsstul, Joshua C. “The evolution of European Union law: A new data set on the Acquis Communautaire.” *European Union Politics*, Vol. 20(4). Sage Journals, 2019.

Huscroft, Grant, Bradley W. Miler, and Gregoire Weber. *Introduction, Proportionality and the Rule of Law*. Cambridge, 2014.

- OECD, *Technology and innovation in the insurance sector*, 2017.
- Rego, Margarida Lima, Joana Campos Carvalho. "Insurance in Today's Sharing Economy: New Challenges Ahead or a Return to the Origins of Insurance?" *InsurTech: A Legal and Regulatory View*.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2019.
- Rego, Margarida Lima. "Insurance in Today's Sharing Economy: The IDD Impact." *Association Internationale de Droit des Assurances*, <http://www.aida.org.uk/docs/Lima-Rego-Presentation.pdf>.
- Restoy, Fernando. "Fintech regulation: how to achieve a level playing field." *Occasional Paper*. No 17, BIS, 2019.
- "Same business, same risks, same rules - A still valid concept?", *So & Sato Law Offices*, last modified Dec 8, 2020, accessed May 13, 2021, <https://innovationlaw.jp/en/same-business-same-risks-same-rules>.
- Sweet, Alec Stone, Jud Mathews, "Proportionality Balancing and Global Constitutionalism." *Giorgio Bongiovanni* (ed). Reasonableness and Law(Springer, 2009).

<Abstract>

A Study on the Insurtech and Insurance Business License - Focusing on the 2019 EIOPA Report -

Kim, Hwa Joong*

Along with the spread of Insurtech, IT-based platforms such as so-called Big Tech or small start-ups are expected to enter the insurance market in the future. In this case, the application of existing entry regulations such as whether a license is required for a business model similar to insurance services is a problem and the balance between industrial innovation and consumer protection may become an issue.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re are frequent delays in norms where the legal system cannot keep up with economic phenomena. In this paper, we explored the implications of the system of South Korea, focusing on the 2019 EIOPA report, which contains the institutional concerns of the EU on InsurTech. Even the EU seems to be still experiencing regulatory confusion in the new insurtech environment, but the minimum premise is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same regulation and proportionality. Based on this review, first, even if there are ambiguities in whether or not the entry regulation of the new type of insurtech model is applied, regulatory arbitrage that hinders the fair competition should not be tolerated. In other words, in light of the principle of same regulation for the same function, if it ultimately performs the risk insurance function and affects a large number of consumers, it should be included in the subject of regulation. Second, although it is included in the regulatory domain, a flexible institutional response is needed that reflects the risk-based proportionality principle.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dynamism of new IT technology convergence into the system, and to take a sophisticated supervisory response based on the comparison

* Ph.D. in Law, Lead Professional, Samsung Fire & Marine Insurance.

between social utility and risk.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entry regulation includes, for example, relaxation of license requirements, permit of temporary exceptions, and adjustment of capital requirement. Under the above basic principles, various business models that may emerge in the future should be reviewed in individual cases. For timely legal and institutional analysis of various business models in the future, open communication with the market should be maintained.

Key Words : Insurtech, Fintech, Insurance Business Act, Regulatory arbitrage, Insurance Business license, Same act same regulation, EIOPA,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Solvency II, Regulatory Sandbox

